#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12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황명선·윤준병·김우영

복기왕 · 김영환 · 용혜인

김문수 · 정진욱 · 채현일

박용갑 • 민병덕 • 송재봉

박희승 • 이용선 • 염태영

박지원 • 박선원 • 정태호

허 영·황정아·신영대

박해철 · 백승아 · 위성락

문금주・김 윤 의원

(26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 처는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되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각 국가원수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 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대통령·총리 등의 경호를 담 당하고 있으며 그 조직의 장은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함.

특히, 최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나아가 수사기관 등에서 적법한 수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통령경호처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함.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삭제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 담당: 경호공무원 제16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5항 중 "치안에"를 "대통령 등의 경호 및 치안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의 소관 사무는 경찰청장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을, "대통령경호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 직 등) ① ~ ⑤ (생 략) 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 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 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 담 <신 설> 당: 경호공무원 ⑦ ~ ⑩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삭 제>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4조(행정안전부) ① ~ ④ (생 <sup>전</sup> 약)
  - ⑤ <u>치안에</u>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 ⑥ ~ ⑧ (생 략)

제34조(행정안전부)	1	$\sim$	4	(현
행과 같음)				

<b>(5)</b>	대통령	등의	경호	및	치안
<u>에</u> -					

⑥ ~ ⑧ (현행과 같음)